

예 산 총 칙

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5,132,111	12,753,963
일반회계		403,373,405	12,101,202
특별회계		21,758,706	652,761
공기업특별회계		12,141,197	364,236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141,197	364,236
기타특별회계		9,617,509	288,5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0,580	9,917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51,041	34,53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92,700	50,781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224,140	6,72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219,048	186,57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